

1989년 임금교섭실태조사

1990

한국노동연구원

目次

- 조사의 의의 및 주요결과
 - 조사대상 기업 및 노동조합
 - 노사의 최초제시 임금인상률
 - 교섭과정
 - 쟁의행위
 - 교섭결과
- <부록> 1989년 임금교섭 실태조사표

表目次

- <표1> 노사의 최초제시 임금인상률 분포
- <표2> 근로자의 최초임금인상률 기준
- <표3> 사용자의 최초임금인상률 기준
- <표4> 근로자측의 최초임금인상률에 대한 평가 (사용자)
- <표5> 회합횟수 및 교섭기간
- <표6> 교섭중 근로자측에 대한 정보제공
- <표7> 쟁의행위 발생여부
- <표8> 노사분규의 원인
- <표9> 타결임금인상률에 대한 평가
- <표10> 쟁의행위 강도별 타결임금인상률 및 최초 (요구율-제시율) 차이
- <표11> 사업체 규모와 임금인상률
- <표12> 노동조합 유무와 임금인상률
- <표13> 노동조합 특성과 임금인상률
- <표14> 임금교섭 타결전 승인투표 실시와 임금인상률
- <표15> 임금인상 방법 및 기준

附表目次

- <부표1> 조사대상 사업체 및 노동조합 특성별 분포
- <부표2> 1989년 임금교섭관련 주요노동일지

● 조사의 의의 및 주요결과

- 1989년 임금교섭 실태 및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된 본 조사는 18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조사원이 선정 사업체를 지정된 일시에 방문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측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음.

· 필요한 부분에서는 본원이 전년도에 실시한 '87·'88년 임금교섭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음.

- 노사의 최초제시 임금인상률

· 근로자측 최초임금인상 요구율과 사용자측의 최초제시율의 차이는 평균 18.1%포인트로서 39.6%의 사업장에서 -1989년 초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의 차이인

-15.9%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음.

· 42.2%의 근로자측이 31%이상의 임금인상율 요구하였고 51%이상의 임금인상율 요구한 근로자측도 7.8%나 되었음.

· 21%이상의 임금인상율 처음부터 제시한 사용자도 10%정도 되었음.

- 근로자측은 70.3%의 사업체에서 물가나 생계비 상승에 기준하여 임금인상율 요구한 반면 사용자는 '기업의 지불능력' 39.6%, '타기업의 임금인상' 18.2%에 근거하여 최초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하였음.

· 전년도에 비하여 사용자측이 근로자측의 임금인상 논리를 어느 정도 수용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용자 (84.3%)는 근로자측의 최초요구율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라고 평가하였음.

·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여부를 보면 '전부지급' 54.2%, '일부지급' 31.3%, '지급 안함' 14.6%로 나타남.

· 노사분규의 원인으로 근로자측은 '임금 및 근로조건 미흡' 47.2% '노사상호간의 불신' 18.9% 이라고 응답한 반면 사용자측은 '근로자측의 과도한 요구' 37.7%, '정치·사회적 분위기 변화' 26.4%라고 대답함.

- 교섭결과

· 타결임금인상률에 대하여 사용자는 67.4%가 무리한 인상이라고 본 반면 근로자측은 21.8%가 사용자에게 무리한 수준이라고 응답함. 근로자측은 21.3%만이 타결인상률에 대하여 만족하였음.

· 타결인상률은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불법쟁의행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음.

그러나 근로자측의 성취율(타결률÷인상률)은 쟁의행위가 없는 경우가 가장 높았음.

·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나 근로자수는 인상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에서 근로자측 최초임금인상 요구율이 더 높은 반면, 사용자의 최초제시율은 오히려 더 낮았음. 근로자측 성취율은 노조가 없는 사업체 (91%)가 있는 사업체 (69%)보다 높았음.

· 노동조합 설립시기가 1년 미만인 사업체의 타결인상률이 가장 높은 반면 노사의 최초요구율과 제시율의 차이가 가장 크고 성취율은 가장 낮았음.

· 현노조대표 선임시기가 2년 이상인 사업체의 요구율과 제시율의 차이가 가장 작고 타결인상률도 제일 낮았음.

· 노조가 있는 반수 이상의 사업체에서 노사대표간에 합의된 인상률에 대하여 승인투표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조합원총회에서 승인투표를 실시한 사업체에서 근로자 최초요구율이나 타결인상률이 높고 최초요구율과 제시율의 차이가 컸음. 그러나 승인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체의 성취율이 가장 높았음.

- 임금인상의 방법은 정액(18.4%) 보다는 정률(81.6%)이 많고, 타결된 임금인상의 기준은 기본급 70%, 통상임금 30%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 기업 및 노동조합

- 1989년 임금교섭 실태조사는 노동부 각 지방사무소(임금복지과 협조) 에게 관할 지역 임금교섭을 대표하는 사업체의 선정을 의뢰하여 총 200여개 사업체를 선정 후 조사원이 선정사업체를 지정된 일시에 방문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음. 조사기간은 1989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었음.

- 조사결과 사용자나 근로자측 중 한측이라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업체가 181개 었음(부표1)

- 조사대상사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19.4%, 경남 15.5%, 서울 14.4%의 순임.
- 산업은 광업 2.8%, 경공업 27.6%, 중공업 45.3%, 3차산업 24.3%로 분포되어 있음.
- 사업체 규모를 보면 1989년 예상매출액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26.8%, 전년대비 증가한 기업이 40.4%임.
- 근로자수가 500인 이상인 사업체가 37%, 500인 미만인 사업체가 63%로서 중소기업체가 더 많음.
-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가 21.5%, 현노동조합 설립시기가 1년 미만인 사업체가 19.2%,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업체가 25.4%, 2년 이상 4년 미만인 사업체가 2.8%, 4년 이상인 사업체가 31.1%임.
- 현노조대표의 재임기간은 1년 미만 52.9%, 1년 이상 3년 미만 45.4%, 3년 이상 1.6%로서 현노조대표의 재임기간이 2년 미만이 대부분임.
- 평균노조가입률은 77.1%로서 노조가입률이 50%이상인 사업체가 91.2%임.

● 노사의 최소제시 임금인상률

-1989년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제시한 임금상승률의 차이는 15.9%포인트였으나 조사대상 단위사업체의 39.6%에서 근로자측의 최소요구율과 사용자측의 최소제시율이 16%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음. 요구율과 제시율의 평균 차이는 18.1%포인트인데 노사의 최초제시율 차이가 31%이상인 사업장도 16.2%나 되었음 (표 1).
 <표 1> 노사의 최초제시 임금인상률 분포

(단위 : 개, %)

	근로자		사용자		노사의 차이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5%이하	0	0	8	5.0	27	17.5
6~10%	5	3.0	42	26.4	31	20.2
11~15%	10	6.0	62	39	35	22.7
16~20%	28	16.9	31	19.5	13	8.4
21~25%	29	17.5	7	4.4	18	5.2
26~30%	24	14.4	4	2.6	5	3.3
31~40%	31	18.7	5	3.1	13	8.4
41~50%	26	15.7	-	-	5	3.3
50%이상	13	7.8	-	-	7	4.5
계	166	100	159	100	154	100

· 한국노총이 요구한 1989년도 적정임금인상률이 26.8%였는데 56.6%의 사업장에서 26%이상의 임금인상을 근로자측이 요구하였음. 42.2%의 근로자측이 31%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고

51%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근로자측도 7.8%나 되었음.

· 한국경총이 제시한 적정임금인상률 8.9~12.9%였는데 30%정도의 기업에서 사용자측이 이 범위 안에서 최초인상률을 제시하였음. 21%이상의 임금인상을 처음부터 제시한 사용자 10%정도 되었음.

-근로자측에 의해 요구된 임금인상률의 기준은 '물가 및 생계비 상승' 40.0%, '한국노총 또는 산별노련의 임금인상지침' 30.3%임. 노총이나 산별의 지침기준이 물가나 생계비이므로 70.3%의 사업체에서 근로자측이 물가나 생계비 상승에 기준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고 말할 수 있음.

· 전년도에 근로자측은 67.7%의 사업체에서 물가나 생계비에 기준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므로 임금인상의 기준에 대한 근로자측의 입장은 변화하지 않았음(표 2).

-사용자의 39.6%가 '기업의 지불능력', 18.2%가 '타기업의 임금인상'에 근거하여 최초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하였음.

· 전년도에 비하여 근로자측 임금인상논리의 첫 번째 기준인 물가나 생계비 상승(7.2→15.1%)을 수용한 사용자가 많아진 반면, 사용자측 첫 번째 논리인 '지불능력' (51.9→39.6%)의 비중이 작아졌음 (표 3).

<표 2> 근로자의 최초임금인상률 기준

(단위 : 개, %)

	1989		1988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 한국노총 또는 산별노련 등의 임금인상지침	50	30.3	63	34.4
· 다른 노조의 임금인상률	8	4.8	5	2.7
· 타기업의 임금인상	26	15.8	15	8.2
· 노동생산성 향상	3	1.8	9	4.9
· 기업의 성장 전망	6	3.6	3	1.6
· 사용자측의 지불능력	5	3.0	21	11.5
· 물가 및 생계비 상승	66	40.0	61	33.3
· 기 타	1	0.6	6	3.3
계	165	100	183	100

주 : 1987년과 1988년 수치는 1988년도 본원에서 실시한 '87·'88 임금교섭 실태조사의 결과임. 보다 자세한 논의는 박원구·박영범의 「단체교섭과 임금인상」 (한국노동연구원간, 1989) 참고 바람.

<표 3> 사용자의 최초임금인상률 기준

(단위 : 개, %)

	1989		1988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 사용자단체의 지침	13	8.2	18	9.9
· 타기업의 임금인상 참고	29	18.2	22	12.2
· 노동생산성 향상 반영	14	8.8	12	6.6
· 기업의 성장전망에 따른 지불능력 감안	63	39.6	94	51.9
· 근로자측 요구 반영	14	8.8	22	12.2
· 물가 및 생계비 상승	24	15.1	13	7.2
· 기 타	2	1.3	0	-
계	159	100	181	100

주 : < 표 2 >와 같음.

· 89년은 전년도의 비하여 사용자측이 근로자측의 임금인상논리를 어느 정도 수용하였으나 근로자측이 요구한 임금인상률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평가한 사용자는 15.7%에 불과하였음. 16.3%가 '터무니없는 무리한 요구', 34.8%가 '상당히 무리한 요구'라고 응답함(표 4).
 <표 4> 근로자측의 최초임금인상률에 대한 평가(사용자)

(단위 : 개, %)

	1989	
	빈도수	비율
· 터무니없는 무리한 요구	29	16.3
· 상당히 무리한 요구	62	34.8
· 다소 무리한 요구	59	33.1
· 적절한 수준의 요구	28	15.7
· 낮은 수준의 요구	-	-
계	178	100

● 교섭과정

- 1989년 임금교섭의 평균회합횟수는 쟁의발생 이전 5회, 이후 5회로 나타났음.
 - 평균소요기간은 쟁의발생 이전 23일, 이후 16일로 나타나서 쟁의발생까지 가는 경우 약 40일 정도의 교섭기간을 가짐(표 5).
- <표 5> 회합횟수 및 교섭기간

	쟁의발생 이전			쟁의발생 이후		
	1989	1988	1987	1989	1988	1987
· 평균회합횟수	5	6	6	5	5	5
· 평균교섭소요일	23	17	17	16	16	23

주 : < 표 2 >와 같음.

- 사용자의 경영정보 제공에 대한 평가가 노사간에 큰 차이가 남.
- 교섭중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기업정보의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63.2%는 많다고 대답하였으나, 근로자측은 35.7%만이 많다고 대답함.
- 사용자는 16.7%, 근로자측은 48.3%가 약간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응답함(표 6).

<표 6> 교섭중 근로자측에 대한 정보제공

(단 위 : %)

	사용자	근로자
· 매우많음	17.8	5.7
· 많음	55.7	31.0
· 약간	16.7	48.3
· 없음	9.8	14.9
계	100	100

● 쟁의행위

- 1989년도의 쟁의행위없는 교섭비중은 74%이며 적법절차를 거친 쟁의행위도 61.7%에 그침(표 7).
- 노사간에 분규원인에 대한 심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표 8).
- 1989년 노사분규의 원인으로(노사분규가 있었던 사업장에서만 응답) 근로자측은 47.2%가 '임금 및 근로조건 미흡', 18.9%가 '노사 상호간의 불신' 이라고 응답함.
- 사용자는 37.7%가 '근로자측의 과도한 요구', 26.4%가 '정치적·사회적 분위기 변화' 라고 응답함.

<표 7> 쟁의행위 발생여부

(단위 : 개, %)

	1989		1988		1987 6.29이후		1987 6.29이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 쟁의발생신고나 쟁의행위없이 타결	118	65.2	130	68.1	151	98.1	86	51.8
· 쟁의발생신고는 하였으나 쟁의행위돌입 이전에 타결	16	8.8	25	13.1	0	-	3	1.8
· 쟁의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을 거쳐 쟁의행위 이후에 타결	29	16.0	25	13.1	1	0.6	8	4.8
· 냉각기간중 쟁의행위돌입 이후에 타결	6	3.3	4	2.1	0	-	2	1.2
· 쟁의발생신고없이 쟁의행위를 수반한 타결	12	6.7	6	3.1	2	1.3	67	40.4
· 기타	0	-	1	0.5	0	-	0	-
계	181	100	191	100	154	100	166	100

주 : < 표 2 >와 같음.

<표 8> 노사분규의 원인

(단위 : 개, %)

	사 용 자		근 로 자	
	빈도수	비 율	빈도수	비 율
· 임금 및 근로조건 미흡	6	11.3	25	47.2
· 교섭절차와 기법 미숙	-	-	2	3.8
· 정치적·사회적 분위기 변화	14	26.4	4	7.5
· 근로자측의 과도한 요구	20	37.7	2	3.8
· 사용자측의 이해부족	-	-	3	5.7
· 노사간의 상호불신	7	13.2	10	18.9
· 단체협약 내용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이견	5	9.4	3	5.7
· 노조설립을 둘러싼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대립	1	1.9	2	3.8
· 노조대표성에 관련한 근로자 상호간의 이견	0	0	2	3.8
계	53	100	53	100

● 교섭결과

- 타결인상률의 적정성에 대하여 노사간에 심한 인식의 차가 있음.

- 조사대상 사업장의 1989년 평균임금인상률은 20.9%인데 타결인상률에 대하여 사용자는 67.4%가 무리한 인상이라고한 반면 근로자측은 21.8%가 사용자에게 무리한 수준이라고 응답함.
-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용자는 31%가, 근로자측은 21.3%가 만족하다고 응답함. 근로자측의 49.2%가 불만은 있으나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보하였다고 대답함 (표 9).

<표 9> 타결임금인상률에 대한 평가

(단위 : %)

	사용자	근로자
· 근로자측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나 기업의 경영면에서 무리한 인상	36.5	7.3
· 근로자측도 불만은 있었으나,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면 무리한 인상	30.9	14.5
· 근로자측의 불만은 있었으나,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면 적절한 수준	16.1	49.2
· 근로자측에 불만스러운 낮은 수준의 인상	1.1	15.1
· 노사합방이 만족하는 적절한 수준	14.9	14.0
계	100.0	100.0

-타결임금인상률은 '쟁의행위 없음' 20.4%, '신고하였으나 쟁의행위 없음' 19.3%, '적법쟁의' 20.4%, '불법쟁의' 26.1%로 나타나서 쟁의행위 강도와 정의관계가 있음.

· 근자측의 최초요구율과 사용자의 최초제시율의 차이는 쟁의행위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교섭 초기단계에서의 노·사간의 커다란 입장 차이는 쟁의행위를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근로자측의 성취율 ((타결률+요구율)×100)은 쟁의행위 없는 경우가 가장 높음 (표 10).

<표 10> 쟁의행위 강도별 타결임금인상률 및 최초 (요구율-제시율) 차이

(단위 : %)

	타결임금 인상률	요구율- 제시율	(타결률+ 요구율) × 100
· 쟁의행위 없음	20.4	14.1	79.3
· 신고하였으나 쟁의행위 이전 타결	19.3	19.3	66.3
· 신고, 냉각기간에 걸쳐 쟁의행위 이후 타결	20.4	26.7	60.4
· 냉각기간중 쟁의행위돌입 이후 타결	25.8	27.5	62.2
· 신고없이 쟁의행위 이후 타결	26.2	26.3	67.3
전 계	20.9	18.1	73.3

1989년 예상매출액에 따른 타결인상률을 보면 '연 500억원 이상' 21.4%, '연 500억원 미만' 20.8%로 나타나 매출액 규모에 따른 인상률은 큰 차이가 없음.

· 근로자 최초요구율과 사용자 최초제시율의 차이는 매출액 500억원, 사업체가 커서 성취율도 높음.

- 근로자수에 따른 타결인상률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11).

<표 11> 사업체 규모와 임금인상률

(단위 : %)

	근로자 최초 요구율 - 사용자 최초제시율	타결인상률	(요구율 ÷ 타결 인상률) × 100
1989년 매출액			
· 500억원 이상	13.9	21.4	77.2
· 500억원 미만	19.7	20.8	71.9
근로자수			
· 500명 이상	17.0	21.2	74.4
· 500명 미만	18.8	20.5	71.1

-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차이

·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의 임금인상률이 21.6%, 없는 사업체는 18.4%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의 인상률이 높았음.

· 근로자측의 최초요구율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가 34%로 없는 사업체의 22.5%보다 높고, 사용자의 최초제시율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가 13.9%, 없는 사업체가 14.5%로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더 높음.

· 성취율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가 91%, 있는 사업체가 69%로서 노조가 없는 경우의 근로자측 요구성취율이 더 높음. (표 12).

<표 12> 노동조합 유무와 임금인상률

(단위 : %)

	노동조합	
	있음	없음
· 사용자 최초제시율	13.9	14.5
· 근로자 최초요구율	34.0	22.5
· 요구율 - 제시율	20.5	7.7
· 타결인상률	21.6	18.4
· (요구율 ÷ 타결인상률) × 100	69	91

- 조합원총회에서 승인투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 최초제시율과 노조 최초요구율과의 차이도 23.4%포인트로 가장 커서 협상 초기부터 노사의 입장 차이가 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 노동조합의 성취율은 승인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이 가장 높았음 (표 14).

<표 14> 임금교섭 타결전 승인투표 실시와 임금인상률

(단위 : 개, %)

		빈도수	비율	최초임금인상 요구율	타결임금 인상률	요구율 - 제시율	(타결율 ÷ 요구율) × 100
· 실시안함		69	47.2	32.3	21.8	18.5	72.6
· 실시함	· 대의원총회	37	25.3	31.4	19.6	18.8	66.3
	· 조합원총회	40	27.3	38.0	23.0	23.4	69.0

- 임금인상의 방법은 정률 81.6%, 정액 18.4%로 정액인상이 압도적으로 많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임금인상의 방법도 정률인상이 82.5%로 정액인상 17.5%보다 큼 (표 15).
- 타결된 임금인상의 기준이 기본급인 사업체가 70%, 통상임금인 사업체가 30%로 나타났음 (표 15).

<표 15> 임금인상 방법 및 기준

	임금인상 방법			임금인상 기준		
	정률	정액	계	통상임금	기본급	계
· 사용자	83.0	17.0	100.0	28.9	71.1	100.0
· 근로자	82.5	17.5	100.0	30.1	69.9	100.0
· 타결	81.6	18.4	100.0	30.0	70.0	100.0

<부표 2> 1989년 임금교섭관련 주요노동일지

일자	노동정책	노사단체	노동조합·노사분규
1988			
10.12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89년 최저임금 14만 4천원 의결		
10.18		·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14만 4천원에 대한 재심신청	
10.28		· 경제 5단체: 내년도 최저임금액에 대한 의의제기	
11.12	· 노동부: 최저임금액 14만 4천원 확정고시		
12. 1		· 한국정총: 확대회장단 회의 개최 - 신년노동문제에 대한 경영대책 마련	
12.12		· 현대중공업 파업 · 마산·창원노조총연합 결성	
12.14		· 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대파업	
12.19	· 경제기획원: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억제방침 발표		
12.23		·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 결성	

일자	노동정책	노사단체	노동조합·노사분규
12.27			· KIET-컴퓨터망 전면제재, KIET 노동쟁의 타결
12.30	· 정부, 정부출연· 방산업체 탈법경 의 감축대책방침 발표		
<u>1989</u>			
1. 6	· 노동부: 1989년 봄 임금교섭에서 임금별·지역별 공동교섭방식 권 유		
1. 20		· 지역·업종별 노 조회의 - 노동법개 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 결성	
2. 4		· 한국노총: 올 임 금인상률 26.8% 제시	
2. 16			· 포항종합제철: 20.7% 임금인상 합의 (가족수당, 월동비 제외)
2. 17		· 한국경총: 올 임 금인상률 10.9% 제시	
2. 23		· 전국노동조합협 회 (전노협) 결성 계획 발표	
2. 27			· 현대연진: 파업 66 일만에 정상조업, 건용목 전위원장 복직합의
3. 5			· 서울지하철노조: 무임승차 강행

일자	노동정책	노사단체	노동조합·노사분규
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절 행사 · 한국노동총연맹: 「임부결승리플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 전국노동법개정추진본부: 「89임금인상투쟁본부」 설립 · 상부쟁전진대회 개최 	
3.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하철 파업물입 및 강제진압
3.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순 부총리: 인종별 임금인상폭 표시할 것을 발표 		
3.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중공업: 공권력 행사
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기금성노조협의회: 1989년도 임금투쟁을 위한 공동투쟁 결의대회 개최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방업체: 임금인상 17%, 주 46시간 노동합의
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안합수부 재야노동단체 간부 일제 검거 시작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그룹: 평균임금 기준 23.3% (기본급기준 17.8%) 임금인상 합의
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역 회사택시 파업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 「임금과 국민경제」 보고서 발표 	

일자	노동정책	노사단체	노동조합·노사분규
5. 7			· 서울대시: 정상운영 7월 1일부터 20.4% 임금인상 합의
5. 12			· 대한석탄공사 산하 8개 광업소 15.5% 임금인상
6. 16			· 市銀노사 임금인상 21.7% 합의 · 5개 市銀노조 임 금합의안 부결
6. 22		· 노총, 市銀임무 동참결의	· 정부, 市銀노사합의 안 백지화
6. 30			· 市銀, 기본급 9.9% 등 임금인상합의
7. 5	· 기획원, 정부투자 기관 임금 10% 미만 억제방침		
7. 14		· 노총, 임금가이드 라인 강행시 총 파업결의	
7. 16		· 노총, 임금위원회 거부	
7. 21	· 상공부, 업종별 공공교섭 추진		
7. 27			· 4개 國策銀, 임금 9.9% 타결
8. 14	· 기획원, 공부원임 금 10% 미만 억 제방침		
10. 8	· 최저임금심의위원 회 공익위: 최저 임금 월 16만 5천 600원으로 결정		

일자	노동정책	노사단체	노동조합·노사분규
10.10	· 정부: 근로자 복 지주택 25만호 건설방침		
10.14			· 연구·전문적 노련 결심
11. 5		· 노총: 「노동법 개정 및 경제 민주화촉구 필기 대회」 보라매 공 원에서 개최	
11.19	· 경제기획원: 국민 경제사회위원회 수용		
11.12			· 지역·업종별 노조 전국회의: 서울 대역 시 「노동자법 철폐 제 및 전노협 건국 실위한 전국노동자 대회」 개최
11.14		· 경총: 경제 6단체 와 공동으로 「경 제단체총합」 구성 추진	
11.21	· 정부: 경단협과 공동으로 「무노 동 무임금」 불응 기업 제재방안 추진	· 경단협: 자동차· 철강·화학 등 3 개 업종 임금교 섭 공동추진	
11.27		· 노총: 올해 도시 근로자 최저생계 비 (4인가족 기 준) 월 한달 78 만 8천원으로 발 표	
11.30	· 정부: 내년도 임 금인상 강력억제 방침		

일자	노동정책	노사단체	노동조합·노사분규
12. 7	· 정부: 임금가이드라인내 인상하면 내년 근로소득세 감면방안 검토		
12.11			· 지역·업종별 노조 전국회의: 전노협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국회의 개최
12.12			· 현대그룹: 과장급 이상 내년도 임금 동결 결정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각호.

<부록> 1989년 임금교섭 실태조사표

조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1. 본 조사는 우리나라의 임금교섭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되는 것입니다.
2. 조사내용은 조사통계법에 의해 그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사무소명 :

회사명 :

회사주소 :

회사전화번호 :

사용자 대담

- 응답자 성명 및 직위 ()
- 주요생산품 : () ()
- 1988년 매출액 () 백만원

(S) 경상이윤율 증가() 감소 ()

· 1989년 예상매출액 () 백만원,

(S) 예상경상이윤율 증가() 감소 ()

· 수출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 방위산업체 여부 : 예 () 아니오 ()

· 1988년말 현재 종업원 (상용근로자) 수 : () 명

· 1989년 노사분규 경험여부 : 예 () 아니오 ()

· 임금교섭 담당자 : ()

· 1989년에 귀사의 임금타결 상황은 ?

1. 쟁의발생신고나 쟁의행위없이 타결 ()

2. 쟁의발생신고는 하였으나 쟁의행위돌입 이전에 타결 ()

3. 쟁의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을 거쳐 쟁의행위 이후에 타결()

4. 냉각기간중 쟁의행위돌입 이후에 타결()

5. 쟁의발생신고없이 쟁의행위를 수반한 타결()

· 1989년 직장폐쇄 여부 : 예 () 아니오 ()

· 임금교섭과정에서 교섭을 위한 회합의 횟수, 교섭개시 이후 타결시까지 소요기간 및 타결월은 어떻습니까?

1. 쟁의발생신고 이전

· 회합횟수 ()회

· 교섭소요기간 ()일

· 교섭타결월 ()월

2. 쟁의발생신고 이후

· 회합횟수 ()회

· 교섭소요기간 ()일

· 교섭타결월 ()월

· 노조의 설립시기는 언제이며, 조합원수는 몇 명입니까?

(제 2조노가 있을시에는 각각의 노조에 대하여 분리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시기 : ()년 ()월

-조합원수 : 생산직 ()명, 사무관리직 ()명

-현노조대표 선임시기 : ()년 ()일

-가입률 (%)

· 금년도 타결된 임금인상율은 어느정도 적정하다고 평가하십니까?

1. 근로자측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나, 기업의 경영면에서는 무리한 인상이었다.

2. 근로자측도 불만은 있겠으나,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면 무리한 인상이었다.

3. 근로자측의 불만은 있겠으나,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면 적당한 수준이었다.

4. 근로자측에 불만스러운 낮은 수준의 인상이었다.

5. 노사쌍방이 만족하는 적당한 수준이었다.

· 근로자측이 요구한 임금인상률을 어떻게 보십니까?

1. 터무니없는 무리한 요구다.

2. 상당히 무리한 요구다.

3. 다소 무리한 요구다.

4. 적당한 수준의 요구다.

5. 낮은 수준의 요구다.

· 임금교섭중 노조측에 제공한 기업정보의 양은 ?

1. 매우 많음
2. 많음
3. 약간
4. 없음

· 1989년중 귀사의 경우 분류의 원인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 중요한 순으로 1,2,3 세개만 골라 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 () 임금 및 근로조건 미흡
 - () 교섭절차와 기법 미숙
 - () 정치적·사회적 분위기 변화
 - () 근로자측의 과도한 요구
 - () 사용자측의 이해부족
 - () 노사간의 상호 불신
 - () 단체협약 내용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이견
 - () 노조법령을 둘러싼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대립
 - () 노조대표성에 관련한 근로자 상호간의 이견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

· 최종임금교섭 타결전에 조합원 혹은 대의원총회의 승인투표가 실시되었습니까 ?

- 아니오 ()
- 예 : 조합원총회 () 대의원총회 ()

· 과업기간중 임금지급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

1. 전액지급 ()
2. 일부지급 ()
3. 지급치 않음 ()

· 1989년도 임금교섭시 귀사의 노사양측이 제시한 최초 임금인상률과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얼마였습니까 ?

1. 최초제시 인상률
사용자측 () 기준 () %
근로자측 () 기준 () %
2. 타결 인상률 (또는 인상액) () 기준 () %, () 원
(정액인상인 경우에도 정률로 환산하여 주십시오)

· 귀사에서 임금인상 교섭시 사용자측에서 최초로 제시된 임금인상률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제시되었습니까 ?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1. 사용자 단체의 지침 ()
2. 타기업의 임금인상 참고 ()
3. 노동생산성 향상 반영 ()
4. 기업의 성장전망에 따른 지불능력 감안 ()
5. 근로자측 요구 반영 ()

6. 물가 및 생계비 상승 ()

7.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노동조합 대답

응답자 성명 및 직위 ()

금년도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평가하십니까 ?

1. 근로자측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나, 기업의 경영면에서 무리한 인상이었다.
2. 근로자측도 불만은 있었으나,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면 무리한 인상이었다.
3. 근로자측의 불만은 있었으나,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면 적절한 수준이었다.
4. 근로자측에 불만스러운 낮은 수준의 인상이었다.
5. 노사상당이 만족하는 적절한 수준이었다.

임금교섭중 노조측에 제공된 기업정보의 양은 ?

1. 매우 많음
2. 많음
3. 약간
4. 없음

(노사분규가 있었던 사업체만 응답) 귀사의 경우 분류의 원인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중요한 순으로 1,2,3 세개만 골라 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 () 임금 및 근로조건 미흡
 - () 교섭절차와 기법 미숙
 - () 정치적·사회적 분위기 변화
 - () 근로자측의 과도한 요구
 - () 사용자측의 이해부족
 - () 노사간의 상호 불신
 - () 단체협약 내용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이견
 - () 노조설립을 둘러싼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대립
 - () 노조대표성에 관련한 근로자 상호간의 이견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

취사에서 임금인상 교섭시 근로자측에서 최초로 제시된 임금인상
물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제시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
나만 골라 주십시오)

1. 한국노총 또는 산별노련 등의 임금인상지침 ()
 2. 다른 노조의 요구임금인상률 ()
 3. 타기업의 임금인상 ()
 4. 노동생산성 향상 ()
 5. 기업의 성장 전망 ()
 6. 사용자측의 지불능력 ()
 7. 물가 및 생계비 상승 ()
 8.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